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66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66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22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일형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22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19,301,8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301,889원 및 그중 11,228,11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을 “이 사건 부동산과 원주시 K 토지에는”으로, 제2행과 제3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있었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2019. 10. 25. 이 사건 부동산과 원주시 K 토지에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L,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과 제5행 사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D의 채무조정 등 절차 이행

1) D은 2019. 11. 6. 춘천지방법원 2019개회750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20. 6. 9.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1. 18. 춘천지방법원 2021하단1044호, 2021하면104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2. 면책 불허 결정을 받았다.

2) D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2. 11. 15.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총 131,598,933원의 채무에 대하여 J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였고, J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12. 28.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이라 한다).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은 이 사건 채권 원금을 2,245,624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96회에 걸쳐 분할납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J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을 하거나 J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채무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2019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주택의 시가는 240,000,000원에 달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하면 104,000,000원(= 91,000,000원 + 13,000,000원)이므로,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만이 담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36,000,000원(= 240,000,000원 - 104,000,000원)에 달한다. 결국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법정 상속분의 가액은 적어도 30,222,222원(= 136,000,000원 × 2/9, 1원 미만은 버림)에 이르므로,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 역시 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J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지므로,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와 D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가 장기간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간병하는 등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과 관련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및 서민금융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서민금융법』

제74조(채무조정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약』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개인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구분한다.

제12조(이행)

①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하 ‘채무관련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을 행사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귀책사유가 없고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해야 할 채무액의 3/4 이상을 이행한 경우

④ 제1항각호의 면책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제22조(신청의 효력)

① 제8조제1항의 접수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부터 계속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관련인이 고의로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한 채무

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의 감소 등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서민금융법 제74조, 제75조 및 협약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J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안에 따라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감면하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안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거나 귀책사유 없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의 3/4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하게 되고(협약 제14조 제1항),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조정신청을 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협약 제14조 제4항),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으로 환원된다(협약 제15조). 이처럼 협약은 개인채무조정안의 확정으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까지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조정에 의하여 감축되었던 채권이 채무조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변제계획의 이행 전까지는 채권이 그 행사 방법이 제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의 액수가 조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약 제12조 제1항이 채권금융회사의 채권 행사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협약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소송행위 등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약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개인채무조정안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권 행사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J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절차는 파산관재인과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만약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미 채무자에 의해 행해진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없게 되므로, 협약 제22조 제2항에 의해 규정된 채권금융회사들의 보전처분 행사 권한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 권한 역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협약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채권금융회사들이 소송행위 등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소송행위 등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동조 제2항은 오히려 채권금융회사의 보전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제소합의의 해석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 협약 제12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을 들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협약으로 인해 채권금융회사의 채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수익자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개인채무조정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나 망인에 대한 피고의 부양 정도를 봤을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해당하거나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기여 정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적 상속분과 달라졌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제826조 제1항이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달라져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여 왔고 앞으로도 거주할 예정이며 D를 비롯한 자녀들이 피고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D에게 이 사건 분할협약에 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D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며, 앞서 본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D의 사해의사나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고, 전득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자 I조합, L가 D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M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앞서 본 M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의 가액(즉 공동담보의 가액)인 30,222,222원보다 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9,301,8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금 19,301,889원 및 그중 11,228,119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의중, 판사 정덕수, 판사 윤재남

별지